

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

(요양보험제도과, '20.11.30(월))

◇ 지난 제6차 실무위 논의(10.28.)를 거친 안건으로 본회의* 서면심의 (11.25.~27.) 결과, 안건 모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

□ 위원회 표결 사유

- 제6차 실무위원회(10.28.수) 논의를 거친 안건에 대해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결정하고자 함
 -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적용에 따른 수가 가산제도 추가 조정안 등에 대해 서면심의로 전체 위원회 투표 실시(11.25.~11.27.)

<서면심의 안건 주요내용>

<안건1> 수가 가산제도 추가 개편안

세부사항	재정영향	비고
① 시설급여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한도 상향	+32억원	·대체 요양보호사 추가고용
② 재가급여 급여비용 가산율 상향(30%→50%)	+530억원(최대)	·휴일근로자에게 추가 보상 ·수급자도 부담 증가
③ 재가급여 '오후(18시~22시) 가산제도' 폐지 - 심야(22시~익일 6시) 가산제도 유지	△704억원	·지급 타당성 부족 ·장애인방문돌봄 심야가산만 인정
④ 시설급여 조리원 추가배치 가산점수 1점 인정	+138억원	·조리원 추가고용 ·급식제공시설

<안건2> 복지용구 고시 개정안

- 복지용구 신규제품 선정(15개 제품), 가격조정(8개 제품), 품질 시정조치(15개 제품), 제품등재 취소(17개 제품)
- ⇒ 원안 의결시 복지용구, 18개 품목 564개 제품 → 18개 품목 562개 제품으로 변경

□ 표결결과: 22인 중 19인 투표(안건1 18표 찬성, 안건2 16표 찬성)

- (의결정족수) 서면심의를 재적위원 22인 과반이상 찬성으로 의결

□ 향후 계획

-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서면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추진